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지사 안내사항

제 Por.13/2561 호

특별 이민 비자(Smart Visa)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자격 인증 신청에 관한 절차 법

2018 년 12 월 18 일에 고시된 투자위원회 종합안내사항 제 Por.12/2561 호 특별 이민 비자(Smart Visa)분야에 관한 신청에 관련된 자격과 조건 확인에 대해 투자촉진법 불교년 2560 년과 2019 년 1 월 16 일과 2019 년 11 월 6 일의 부처장의 의결에 의해 투자위원회 위원회는 2019 년 2 월 1 일에 고시된 투자위원회 안내사항 제 Por.5/2561 호 특별 이민 비자(Smart Visa)분야에 관한 신청에 관련된 자격과 조건 확인을 취소하고 이 안내사항의 내용을 고시함

1. 투자위원회 지사에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요청하는 외국인은 비자 담당 과 워크퍼밋 사무소(One Stop Service Center for Visa and Work Permit: OSS) 또는 태국 대사관 또는 해외 영사관 그리고 해당 부서에 비자 및 취업 허가 센터에 요청을 보내도록 함
2. 자격 요건 진행
 - 2.1 비자 서비스 센터와 취업 허가증 자격 요청을 기관에 보내고 해당 내용을 접수 한 날로부터 3 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진행됨
 - 2.1.1 디지털 경제 진흥 사무소, 국가 과학 기술 개발 기관, 태국 국립 연구위원회, 과학 기술 연구소 등의 공인 전문가 자격 인증
 - 2.1.2 국가 혁신기구 (공공 기관), 디지털 경제 진흥청 등 대상 산업 인증
 - 2.1.3 생산 과정에서 기술이 들어간 벤처 기업의 생산이나 서비스 또는 국가 과학 기술 개발 기관, 디지털 경제 진흥 사무소 등과 같은 대상 산업의 사업 인증
 - 2.1.4 인큐베이션(Incubation) 또는 빠르게 성장하는 프로젝트(Accelerator) 혹은 국가 혁신기구와 같은 기타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인증 (공공 기관)받는것이며 디지털 경제 진흥 사무소가 예시임

인큐베이션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합작 투자를 받거나, 정부 또는 디지털 경제 진흥 사무소 혹은 관련 정부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함

2.1.5 벤처 자본 회사(Venture Capital Company)

2.1.5.1 벤처 자본 회사(Venture Capital Company)는 기술을 사용하는 분야에 합작을 하거나 사업에 투자를 하는 분야로 생산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목표로하는 산업과 일치하고 과학기술 개발 기관과 디지털 경제 진흥 사무소등이 예시임

2.1.5.2 벤처 자본 회사(Venture Capital Company)는 민간 부문으로서 기술을 사용하는 분야에 합작을 하거나 사업에 투자를 하는 분야로 생산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목표로하는 산업과 일치하고 혁신 센터(공공기관), 디지털 경제 진흥 사무소등이 예시임

2.1.6 Startup Camp 형태의 창업 사업이나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해당되며 혁신센터(공공기관), 디지털 경제 진흥 사무소, 투자위원회 위원회 지사등이 예시임

2.1.7 국내에서 기술과 혁신을 중요한 무기로 사용하여 만들어진 기업으로 혁신센터(공공기관), 디지털 경제 진흥 사무소등이 예시임

2.1.8 태국에서의 전문가와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대체 분쟁 해결소(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태국 중재 센터(Thailand Arbitration Center), 태국 중재 기관(Thai Arbitration Institute)등이 해당

2.1.9 국내에서 목표로 하는 산업을 창업하는 경우로 혁신센터(공공기관), 디지털 경제 진흥 사무소등이 해당

2.1.10 외무부를 포함한 범죄 기록 및 상황 조사

2.1.11 출입국 관리국을 포함한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비합법적인 입국을 조사

2.1.12 법으로 금지된 일이 아닌지 조사로 행정위원회와 고용하는것이 해당

2.2 항목 2.1.1-2.1.12 의 관련 내용의 심사 결과를 20 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비자 및 취업 허가 서비스 센터에 알려야함

2.3 비자 및 허가 서비스 센터에서 자격 발표에 대한 내용은 2.2 의 해당 내용에 따라 접수 한 날로부터 7 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다음과 같이 결과를 통지함

- 2.3.1 자격에 대한 인증이 통과하지 못하고 관련된 기관 인증 신청에 대한 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다름
- 2.3.2 자격에 대한 인증이 통과한 경우
- (1) 비자 및 허가 서비스 센터에서 특별 이민 비자(Smart Visa)에 관련된 심사 결과를 신청자가 받은후 해외 비자 및 취업 허가 센터, 대사관 또는 태국 영사관에 요청을 하거나 비이민 비자 신청을위한 자격 인증 요청을 동부 경제 회랑 혹은 다른 출입국 관리소에 알리고 이는 자격요건의 규율로서 발급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진행되어야함
- (2) 결과를 이민국 외무부나 동부경제회랑 또는 이민국이 지정한 다른 관련된 장소에서 입국에 관련된 결과를 통보
3. 배우자와 합법적으로 따라온 자녀는 외국인으로서 1 번 항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자 및 워크퍼밋에 대한 내용을 알리며 이 부분은 2.1.10-2.1.12 를 따르며 비자와 및 허가 서비스 센터에서 2.3 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통보
4. 기간이 만료 된 후 일시적으로 태국에 체류하고자하는 외국인은 기간 만료 60 일 전까지 1 번 항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5. 외국인은 태국에서 임시 거주 한 날로부터 1 년마다 상황 및 현재 상태를 보고하기위해 사무소에서 규정한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함
6. 특별 이민 비자(Smart Visa)에 대한 자격 요건 검토 및 승인에 대한 심사 결과는 규정 된 조건에 따라 명확하고 정확한 문서 및 증명자료와 함께 요청 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함
7. 이 권리를 가지고있는 자가 특별 이민 비자 (Smart Visa)를 취소하고자하는 경우, 비자 및 허가 센터에 서면으로 통지해야하고 비자 서비스 센터와 취업 허가를 통한 내용을 당국에 알리고 경우에 따른 관련 작업을 해야함
- 2019 년 12 월 18 일 이후로 고시후 적용

Duangjai Asawachintachit
(Ms. Duangjai Asawachintachit)

투자촉진위원회 비서장